

# 『하나기업성장펀드』 2024년 선정계획 공고

「하나기업성장펀드」의 2024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선정 개요

항 목	세부내용
위탁운용 금액	○ 200억원 이내 * 펀드별 목표결성금액은 혁신성장펀드 선정 조건과 동일
선 정 운용사수	○ 2개사
운 용 사 신청자격	○ 「혁신성장펀드(성장지원펀드, 혁신산업펀드)」 2024년 선정 운용사
출자대상 투자기구	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* * 경영참여 목적에 한함 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창업·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※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·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투자기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펀드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
운 용 사 선정방법	○ 선정계획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* 한국성장금융 : <a href="http://www.kgrowth.or.kr">www.kgrowth.or.kr</a> (출자사업 공고) ○ 하나금융그룹과 제안사·제안펀드 및 제안펀드 내 피투자기업 간의 협업 방안 또는 시너지 창출방안을 제시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여 운용사 선정과정에 반영
접수일시	○ 「혁신성장펀드」 2024년 사업 선정 운용사 대상으로 개별 안내
심사결과 발 표	○ 2024년 10월 중 * 제안서 접수 상황, 평가 진행상황 및 외부 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펀 드 결성시한	○ 2024년 12월 31일 * Multi closing은 '25.5월말 이내로 허용(해외출자자에 한하여 '25.12월 말까지 허용)

## 2. 선정 기준 및 의무비율

세부내용	
○	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비율은 기 선정된 혁신성장펀드 제안 조건과 동일하되, 하기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
○	(협업방안) 제안펀드·제안사·피투자기업과 하나금융그룹간 시너지 창출 및 협업 방안을 제안 운용사가 자율 제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안은 구체적·현실적으로 작성하되, 규약에 반영 필요</li> <li>- 제안펀드 수탁은행을 하나은행으로 지정해 제안할 경우 선정 시 규약 반영 예정</li> </ul>
○	(기술금융) 우수 기술기업*에 투자집행금액의 80%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구주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되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의 주식연계채권은 신규투자 및 구주 등에서 모두 제외 <p>*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(TI5) 이상이거나, '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' 및 '발명진흥법'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</p>

## 3.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세부내용
출자금액	○ 200억원
운 용 사 출자비율	○ 약정총액의 2% 이상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</li> <li>* 「상법」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운용사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(단,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)</li> <li>※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</li> </ul>
존속기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(1년씩 2회 연장가능)
투자기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
운용보수 및 핵심 운용인력	○ 기 선정된 혁신성장펀드 제안 조건과 동일

항 목	세부내용
출 자 자 제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</li> <li>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의 출자가 책임 운용강화에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</li> <li>* 타 정책자금과의 매칭시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필요</li> </ul>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</li> <li>* 펀드 최종결성시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</li> <li>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</li> </ul>
회 계 감 사 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</li> </ul>
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</li> <li>○ 펀드운용 등에 대해 출자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</li> <li>○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</li> </ul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</li> <li>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 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</li> <li>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기 선정된 혁신성장펀드 제안 조건 및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름</li> </ul>

## 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### 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,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(직원인 경우) 또는 문책경고(임원인 경우)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#### 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목표 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 시,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

## 5. 제재 사항 및 기타

### 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 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### □ 기 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 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접수일 직전 분기말(**24.6.30**)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## 6. 선정절차 및 일정

###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현장실사 → 제안(구술)심사 → 최종선정

## 7. 지원방법

### 지원방법

- 출자자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당일 접수시간 내 제출
- ※ 제출 방법 및 양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

## 8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- 접수처 :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SK증권빌딩 11층 한국성장금융

- 문의방법 :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  
(문의사항 집계, FAQ 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 요망)

-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1팀 (02-2090-9188, innovone@kgrowth.or.kr)

2024년 9월 23일

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